

노인학대 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인 이기민

편집인 이현민, 이해영, 김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9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본 교육교재는  사회적기업 청밀 과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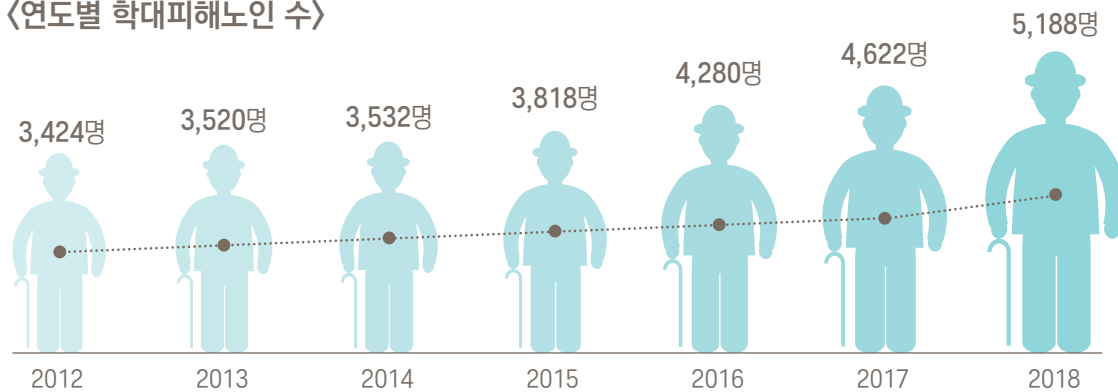
01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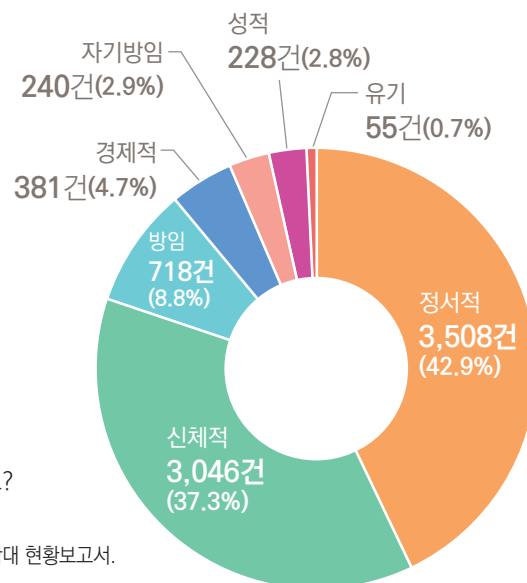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2 나는 신고의무자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행동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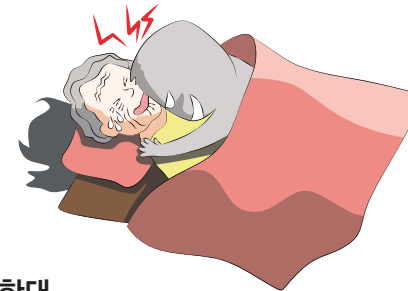
예) 신체 구타 · 억압 · 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 · 장치 · 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 · 투입, 강제노동 등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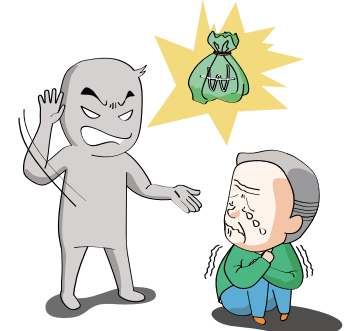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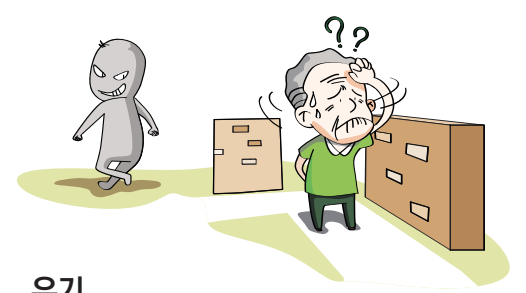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웜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바람직한 대처방안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A요양보호사는 중증치매를 앓는 B노인이 비위관(콧줄)을 자주 빼서 걱정이 가득하다.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 식사만으로는 영양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영양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없이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했다.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뭐라고?”

“어르신,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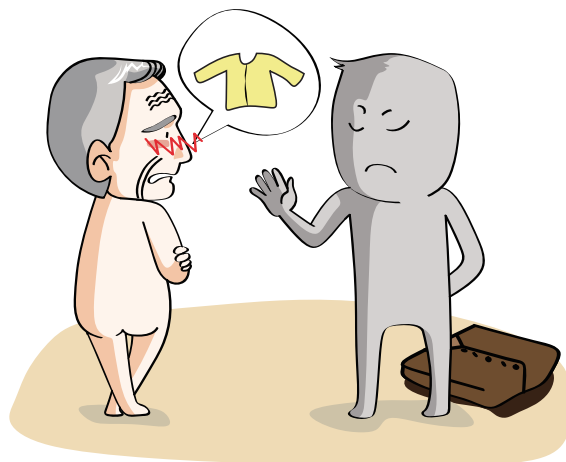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노인과 B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와 큰 소리로 말하다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할까 걱정된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을 변화시켜 고음이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안 되며, 직원교육을 통해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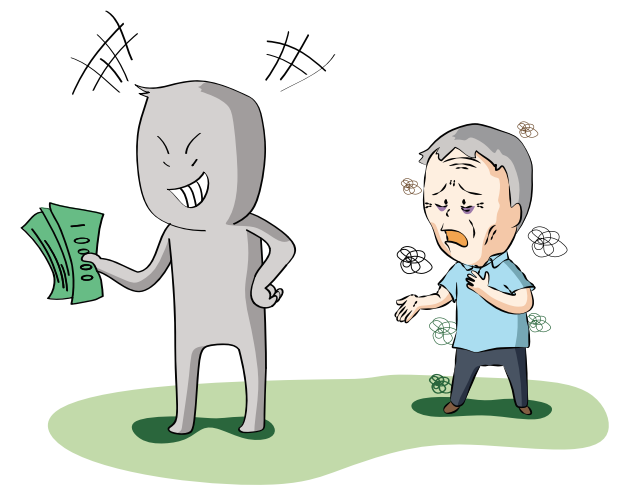
시설 입소자 목욕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사무국장은 직원배치표를 골똘히 보고 있다.
보호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어르신의
목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서비스에 배치
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요즘 C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C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보호자에게 권리를 위임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르신 개인 소유 통장 등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노인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노인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입출금내역 및 사용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두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요청 시에 수시로 재정사용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 보실래요?”
“.....”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 약 복용도 거부하시는 M노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M노인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먼저 보호자에게 노인의 상태를 알리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에게는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겨 추이를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편의를 위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한 노인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유동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 시간을 가지게 할 시에도 틈틈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05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 · 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관서 작성의 예

〈이관 시 필수 전달내용〉

- 접수일시: 1월 27일 15시
- 상담원 이름: 김수진
- 신고자 이름: 홍길동
- 신고자 전화번호: 010-1234-5678
- 학대피해노인 이름: 홍철수
- 학대피해노인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 학대행위자 이름: 이영희
- 접수내용: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함. 학대피해노인은 치매로 인해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 길가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그러한 학대피해노인을 보며 무능하다, 나가 죽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기도 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노인으로서의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미를 갖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6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사례

A노인의 보호자는 시설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던 중 어머니의 얼굴과 양 팔, 손목에 알 수 없는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함께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B요양보호사가 A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손으로 A노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팔과 손목을 발로 밟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요양보호사 또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시설장도 학대 발생사실을 인정하며 학대행위자인 B요양보호사를 퇴사 처리 할 것임을 알렸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례를 **노인학대로 판정**하였으며, **재학대 발생위험**이 없도록 학대행위자(B요양보호사)의 퇴사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설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관할 시청에 송부**하였다.

관할 시는 본 사례를 장기요양기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행정조치 결과와 함께 **타 시설로 전원조치**된 A노인이 새로운 시설에서 건강히 잘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 한 후 사례를 종결하였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02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 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03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05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4

07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¹⁾

Q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⑩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⑪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⑫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⑬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⑭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일부발행.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p220.

○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 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 ③ 시설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학대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19).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일부발행.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p225.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결과 제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인권교육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집합교육(연 4시간 이상) 또는 인터넷 교육(연 6시간 이상) 이수

○ 교육결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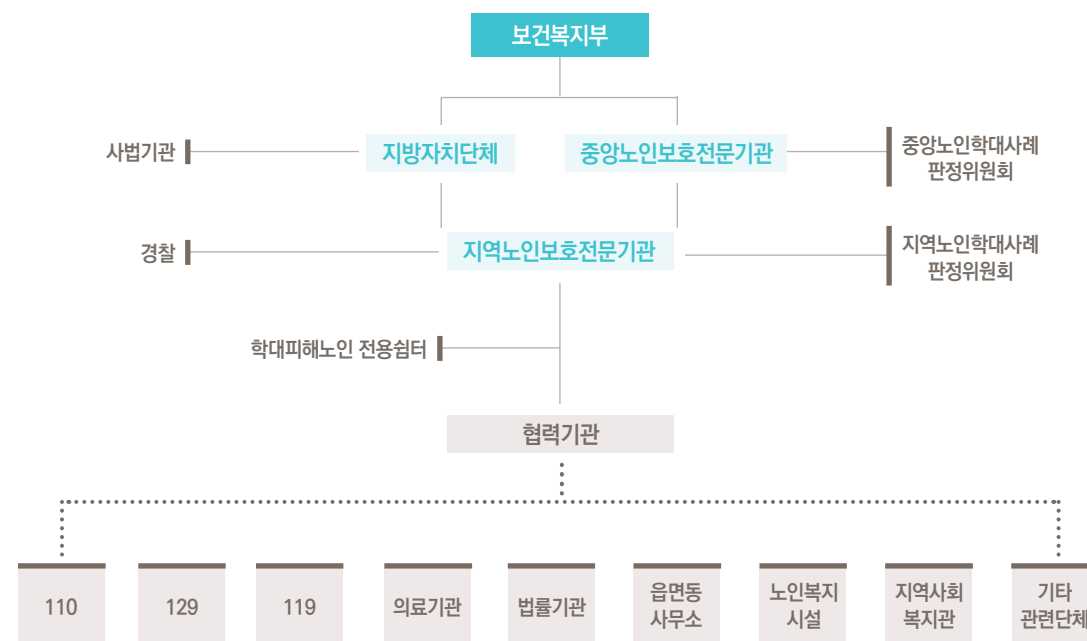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도(노인복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08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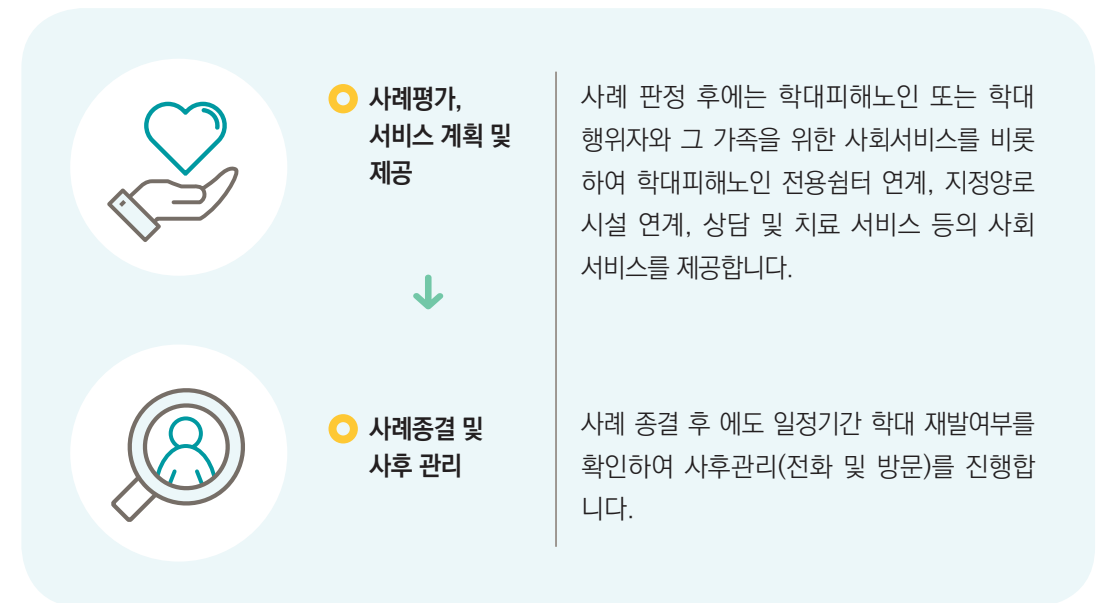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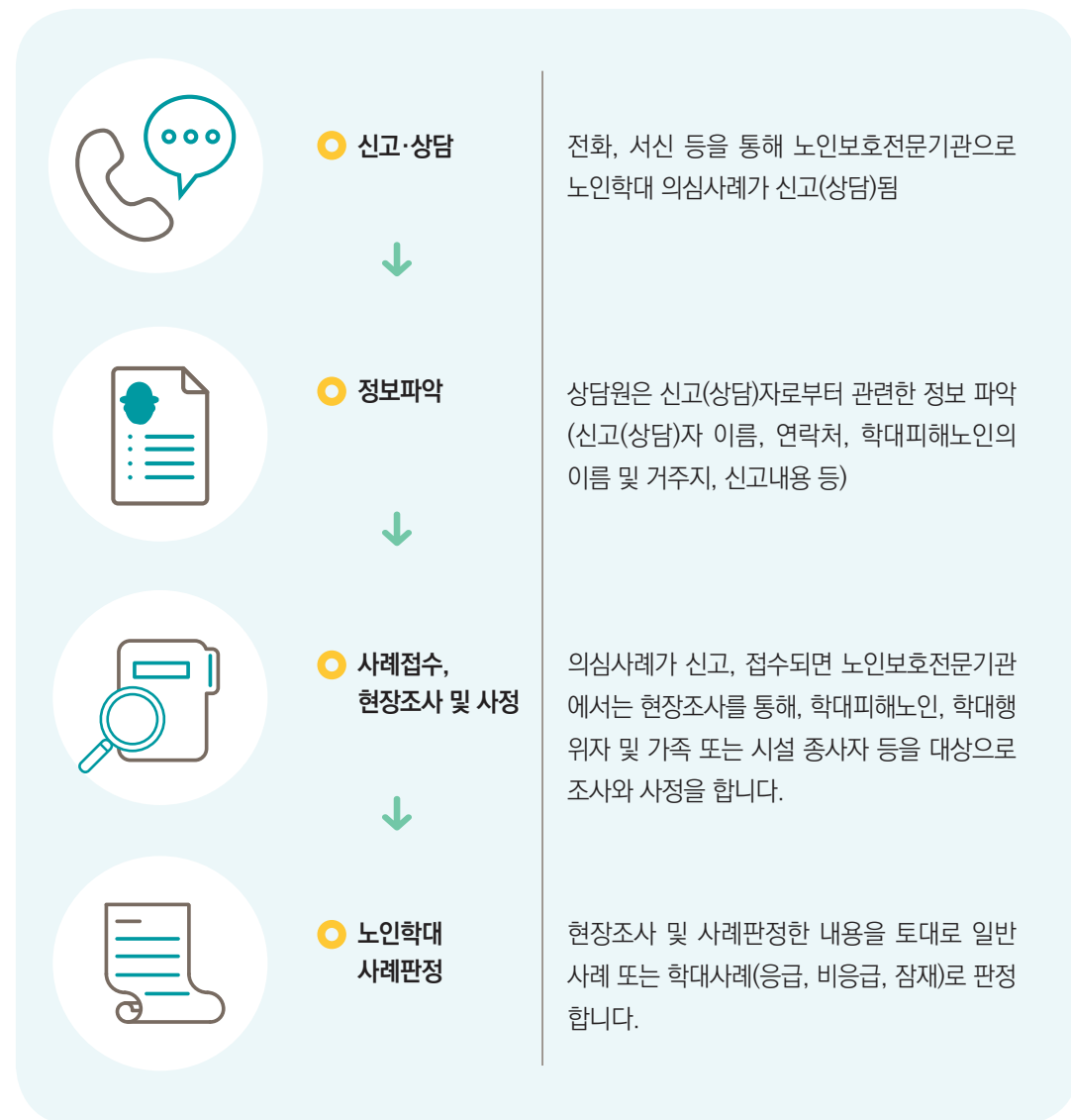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7쪽 참고)

0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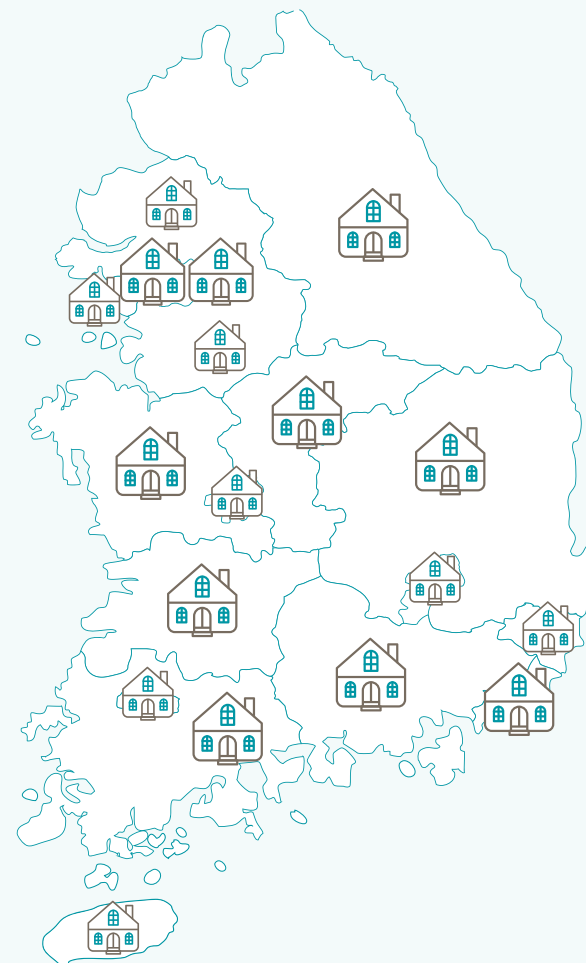
서비스내용

-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기준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19. 10. 기준)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앙		-	02)3667-1389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광진구	02)921-1389
	서울서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2)3157-6389
부산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	대구남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053)472-1389
	대구북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053)357-1389
인천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26-8792
	인천서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69-0533
광주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42)472-1389
울산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032)683-138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268-1389
강원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033)655-1389
충북	강원남부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33)744-1389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
충남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
	충남*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041)534-1389
전북	충남남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041)734-1389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063)273-1389
전남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443-1389
	전남동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경북	전남서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나주시	061)281-2391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	054)248-1389
경남	경북서북부*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예천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054)655-1389
	경북서남부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054)436-1390
제주	경남*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055)222-1389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센터 운영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